

『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0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10월 11일

제1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김 인 종

나. 제안이유

- 새로운 법제도 시행 등으로 신규행정수요가 발생된 업무와 부서간 업무 조정 등에 따른 기관별 소관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평가분석업무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이관에 따른 업무조정 (안 제5조제2항)
-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업무의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규정(안 제9조제2항)
- 건설기계등록관련 업무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 규정 (안 제19조제12호)

라. 참고사항

- 도 자치행정과-48('06.1.3)호의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보강지침
통보
- 도 자치행정과-4917('06.5.17)호의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
관련 인력 배치 권고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 조례안은 법 제정 등으로 신규행정수요가 발생된 업무와
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기관별 소관업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임
- 주요 개정내용은
 -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의 「시정주요 업무평가」 등의 평가분석
업무를 기획정보실로 조정하고
 -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「도
시기반시설부담금 및 부동산거래에 관한 업무」를 건설도시국
으로 조정하였으며
 - 건설기계등록 업무 증가 등으로 신설된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
로 일부 조정하는 등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개정안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